

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

<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, '24.4.16.(화) >

1. 추진배경

- 코로나19 치료제 3종(먹는 치료제: 팍스로비드, 라게브리오, 주사용 치료제: 베클루리주)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, '20.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
-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(경계→관심, 5.1.)으로,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
- 다만,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 시중유통체계 미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
- 이에,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

2.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

- **(추진방향)**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*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,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
 - * (먹는치료제)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(팍스로비드), 만 18세(라게브리오) 이상 면역저하자·기저질환자, (주사제) 중증 입원환자
- **(부과금액) 5만원**(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)
 - 단, ①의료급여 수급권자,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
- **(추진체계)** ①치료제를 조제·투약하는 의료기관·약국(치료제 담당기관)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, ②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(상계) 후 ③질병청에 반환
- **(시행일자)** '24.5.1.(위기단계 하향 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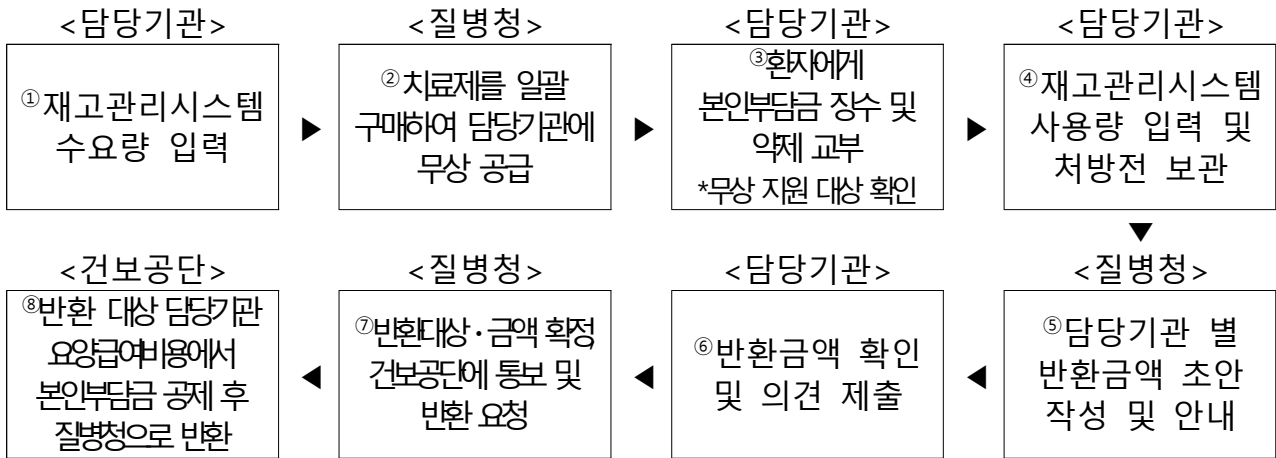
3. 세부 추진 절차

- **(담당기관 지정)**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(약국, 의료기관) 지정 절차를 통해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 확보

* **(지정절차)** ①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신청(약국, 의료기관→관할 보건소) → ②신청기관 요건 확인 및 담당기관 지정 통보(보건소→담당기관) → ③지정 기관 목록 및 서류(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) 제출(보건소→시·도→질병청→건보공단)

- **(본인부담금 시행)** 분기별 정산절차 진행(1차: 7월, 5~6월분, 2차: 10월, 7~9월분, 3차: '25.1월, 10~12월분), 정산완료 후 반환금 국고 납부

<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절차 >



4. 협조요청 사항

- 기존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및 베클루리주 공급 기관 대상으로 재지정 안내 및 본인부담금 공제 관련 동의서 등 서류 확보(4.4주)

* 기존 "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·조제기관"에서 "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"으로 명칭 변경 및 지정요건(동의 여부 등) 변경에 따른 재지정 필요

** 정책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제·투여기관으로 지정대상 한정

5. 향후 추진 일정

- 담당기관 지정 신청(~4.24., 담당기관) 및 지정 목록 통보(4.25., 보건소·시·도)
-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개정 배포(~4.26.)
- 담당기관·지자체·보건소 대상 온라인 설명회(2차, 4.25. 예정)
- 담당기관 및 대국민용 홍보물(리플렛 등) 배포(4.4주)

□ **무상지원 유지 대상**

-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(1·2종)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
<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>

구분		내용
의료급여 1종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- 18세 미만, 65세 이상 - 중증장애인 - 임산부, 병역의무이행자 등
	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재민(재해구호법), 노숙인 ▶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('23.1.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) -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-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-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·가족 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-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과 그 가족 -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*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※ 행려환자 (의료급여법 시행령)
의료급여 2종	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
	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('23.1.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)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·중증질환자,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

붙임2

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·관리 절차

※ 5.1. 시행 이전 기존 담당기관 재지정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자료 참고

□ 담당기관(약국·의료기관) 지정

- (지정요건) ①약국(처방기관 주변 소재 약국 우선)*, ②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원내약국** 신청 가능

* 관할 보건소에서는 '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'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근 담당 약국 지정 권고하며,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 지정·관리 필요

** (상급)종합병원, 병원(요양·정신병원 제외), 의사가 있는 치과(한방)병원

- (지정절차) ①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신청*(약국, 의료기관**→관할 보건소) → ② 신청기관 요건 확인 및 담당기관 지정 통보*** (관할 보건소→담당기관) → ③ 지정 기관 목록 및 서류(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등) 제출(보건소→시·도→질병청→건보공단)

- (지정취소절차) ①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(필요시, 질병청→관할 보건소, 공문) → ② 지정 취소 통보(관할 보건소→해당 약국·의료기관)

* 신청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방식(공문, 메일, 팩스 등)에 따라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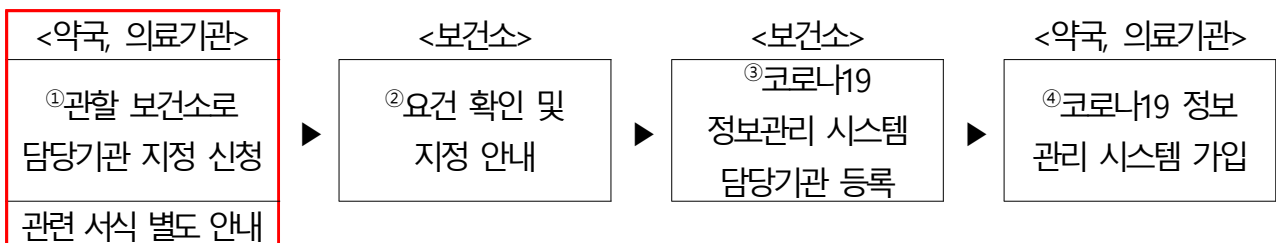
**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(원내약국)은 의료기관 요양기호와 기관명(원내약국)으로 작성·제출

*** 관할 보건소에서는 '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'에 지정서 교부 필수

- (재고관리시스템 등록) 「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」은 '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'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(<https://covid19.kdca.go.kr/>) 內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 필요

* (절차) 담당기관 신청 → 보건소 등록

<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절차 >



* ①번 절차 진행 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(별도 안내) 제출